

(주)하나트러스트글로벌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

이사회 의사록

(2021년도 제4차)

주식회사 하나트러스트글로벌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(이하 “회사”)의 이사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다.

1. 일시: 2021년 10월 01일(금) 오후 3시 30분
2. 장소: 본점 회의실(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, 15층)
3. 의안
 - 제1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
 - 제2호 의안 : 정의개서대리인 선임의 건
 - 제3호 의안 : 제2차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결정의 건
4. 출석한 이사의 수 : 총 3인 중 3인 출석
5. 출석한 감사의 수 : 총 1인 중 1인 출석

의장인 회사의 대표이사 박영희는 의장석에 등단하여 정관과 상법에서 정한 본회의 소집절차에 관하여 출석이사의 수가 정족수를 충족하였으므로 본회의가 적법하게 성립됨을 설명하고 개회를 선언하다.

■ 제 1 호 의 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

의장은 정관 변경의 건에 관하여 배부한 이사회 자료를 통하여 설명한 후, 이를 참석이사들의 심의를 구한 즉 참석이사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함에 따라 제1호 의안을 승인 가결하다.

변경전	변경후
제 9 조 (주식의 종류)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. ② 회사가 발행할 보통주식은 의결권이 있다.	제 9 조 (주식의 종류)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, 종류주식으로 한다. ② 회사가 발행할 보통주식, 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있다.
제 9 조의 2 (주식양도의 제한) 회사의 모든 주식의 양도는 이사회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, 이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.	- 삭제 -

-신설-	제 9 조의 2 (종류주식의 내용) ① 회사는 종류주식을 [사십육만](1460,000)주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다. ② 회사는 이익배당시에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당한다. 1. 최우선으로, 종류주식에 대하여 1주당 1주의 발행가액에 연 4.0%의 비율을 일할 계산하여 곱한 금액을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배당한다. 2. 제1호에 따른 배당 후 남은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, 보통주식에 대하여 각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당한다. ③ 어느 사업연도에 종류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이 전항에 정한 배당률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해당 종류주식의 이익배당액에 추가하여 배당한다. ④ 회사 청산시 다음과 같이 잔여재산을 분배한다. 1. 최우선으로, 종류주식에 대하여 누적된 미배당분이 있는 경우, 그 미배당분을 해당 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분배한다. 2. 제1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은 종류주식, 보통주식에 대하여 발행가액 상당액에 달하는 만큼을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분배한다. 3. 제2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은 보통주식에 대하여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분배한다. ⑤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종류주식, 보통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.
제 10 조 (주권의 종류) 회사가 발행할 주권은 1주권, 5주권, 10주권, 50주권, 100주권, 500주권, 1,000주권, 10,000주권, 50,000주권, 100,000주권 및 1,000,000주권의 11종으로 한다.	제 10 조 (주권의 종류) 회사가 발행할 주권은 1주권, 5주권, 10주권, 50주권, 100주권, 500주권, 1,000주권, 10,000주권의 8종으로 한다.
제 14 조 (명의개서대리인)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.	제 14 조 (명의개서대리인)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.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. ③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,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, 주권의 발행, 신고의 접수,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

	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.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.
- 신설 -	제 15 조의2 (전자주주명부) 회사는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
- 신설 -	제 15 조의3 (주주 등의 주소,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)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,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. ③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.

■ 제 2 호 의 안 : 명의개서대리인 선임의 건

의장은 명의개서대리인 선임의 건에 관하여 배부한 이사회 자료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한 후, 이를 참석이사들의 심의를 구한 즉 참석이사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함에 따라 제2호 의안을 승인 가결하다.

- 아 래 -

1. 명의개서대리인의 상호 및 본점소재지
 - 상호 : 주식회사 국민은행
 - 본점소재지 :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26(여의도동)
2. 계약기간 : 주권 인수일로부터 3년(당사자간 합의시 중도해지 가능)
3. 업무 범위
 - 유가증권 명의개서 대행업무
 - 유가증권 발행대행업무
 - 주식배당금 및 사채원리금의 지급대행업무
4. 수수료
 - 기본 수수료 : 5,460,000원/년
5. 기타사항
 - 대행업무의 범위 및 기타 상세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함.






■ 제 3 호 의 안 : 제 2 차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결정의 건

의장은 다음과 같이 부의안건에 대한 승인을 얻기 위해 임시주주총회의 개최를 제안하고, 참석이사들의 심의를 구한 즉, 참석이사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함에 따라 제3호 의안을 승인 가결하다.

- 다 음 -

1. 일 시 : 2021년 10월 01일(금) 오후 5시30분
2. 장 소 : 본점 회의실(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, 15층)
3. 부의안건

제 1 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

의장은 이상으로 금일의 의안이 전부 심의 종료되었음을 설명한 후 폐회를 선언하다. (폐회시간: 오후 4시)

이사회 경과 요령과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들 및 감사 전원이 다음에 기명 날인하다.

2021년 10월 01일

주식회사 하나트러스트글로벌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

대 표 이 사 박 영 희



기타비상무이사 김 연 희



기타비상무이사 정 현 섭



감 사 이 재 호

